

# 지방세 환급 신청 안내

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(2023.3.14.)



## 환급 대상자

구 분	생애최초 취득 주택(제36조의3)	일반 감면
소급일자	'22.6.2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	'23.1.1.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자
대상자	12억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자	산업단지,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등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자
감면액	200만원을 한도로 취득세 면제	감면대상자별 적용 규정에 따라 상이

## 환급 절차 안내

해당 지방세를 신고·납부한 구·군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

### 경정 청구 (납세자→구·군청)

- (경정청구서) 환급계좌 기재 등
- (감면신청서) 감면사유 기재 등

### 환급 여부 검토 (구·군청)

01

-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

### 경정 결정 (구·군청→납세자)

02

- (경정결정서) 경정청구 결과 통지
-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조치

03

※ 기타 구체적 감면요건, 환급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하구청 세무과 취득세계(051-220-4191~7)에 문의